

제12장
디지털 무역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제1.2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 나. 제11.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 다.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과 그러한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다.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 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송장을 처리하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하며, 그 전송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정부 데이터란 중앙정부에 의해 보유되고, 국내법에 따라 대중 공개가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국이 대중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²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12.2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WTO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2.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정부조달
 - 나. 제1.2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금융 서비스, 또는
 - 다. 제12.12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투자) 및 그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치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11조, 제12.18조, 제12.19조 및 제12.20조에 포함된 의무는

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장(투자)의 관련 규정, 예외 및 비합치 조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된다.

5. 제12.11조, 제12.18조 및 제12.19조에 포함된 의무는 제8.7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4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

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12.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전자인증에 관한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한 적절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 다.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가 전자인증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갖도록 허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자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12.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 가. 세계관세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을 고려하여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 다.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로 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제12.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 나.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³ 소비자에게 다른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하거나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⁴ 오도하거나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업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에 대한 묵시적인 사실의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중대한 허위 표시 또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여하는”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무역의 거래 이전 단계를 포함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나 다양한 분야별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가격, 목적에의 적합성, 수량 또는 원산지와 같은 사안, 또는
 - 2)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⁵
- 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의도나 합리적인 능력 없이 그에 대한 공급광고를 하는 것
- 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대금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또는
- 라.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
3.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와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 나. 모든 구매 조건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다. 상품의 안전과, 적용 가능한 경우,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중의 서비스의 안전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 법과 규정을 공표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중대한 허위표시 또는 거짓 주장에 관한 제2항 가호 2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가. 개인 데이터가 수집 및 사용되기 전에 자연인으로부터 통지된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나. 각국의 개인 데이터 보호법에서 개인 데이터의 부적절한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5. 각 당사국은 국경 간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위한 것도 포함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소비자 보상 또는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과 인식을 촉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오도적이고 사기적이며 기만적인 온라인 상업 활동이 점점 국경을 초월하며,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과 조정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합의한 대로, 이 조에 명시된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소비자 보호 정책, 법과 규정,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그 밖의 관련 기구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력하고 조정한다. 그러한 협력과 조정은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교환된 영업 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

제12.8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 · 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⁶ 이러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수집 제한, 데이터의 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그리고 책임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 데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개인 정보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5. 양 당사국이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제도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광범위한 국제적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9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소비자가 다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의 이익을 인정한다.

-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⁷
-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 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⁷ 양 당사국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한정적으로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제12.1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자국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2.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

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2조

개방 정부 데이터

1. 양 당사국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 · 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정부 데이터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데이터가 개방형 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장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행과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사안에 있어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12.13조

사이버보안

1. 양 당사국은 전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

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이버 보안 사고의 예방, 탐지 및 완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과 같이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양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

3. 양 당사국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포용성 및 자격의 상호 인정 촉진과 관련된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2.14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과 정책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의 전자송장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전자송장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송장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법적 절차에서의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전자송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자국 법과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상호운용성⁸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을 촉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전자송장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5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이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와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연구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 및 발전시키며, 더 경쟁력 있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책임감 있게 관리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을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형평성, 비차별 및 포용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시장, 그리고 근로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자연인의 사생활, 건강, 안전, 보안, 복지 및 권리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권리, 사생활 및 안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설계, 개발, 사용 및 평가를 지원하는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또한 피해 방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윤리적 고려사항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의 시험 및 검토가 AI 거버넌스 체계의 목적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4.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경쟁력 설명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포용성, 보안 및 사생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인간 중심적 가치 및 신뢰성을 포함하여,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⁸ 그러한 시스템은 각자 서로 다른 전자송장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송장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며, 개방형 표준을 활용한다.

고려해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AI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우수 관행 및 기타 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력해야 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의 인공 지능 기술의 책임감 있는 설계, 개발, 사용 및 평가를 지원하고, 상업화 기회를 장려하는 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12.16조 디지털 무역 표준

1. 양 당사국은, 준수 비용을 감소시키고 일관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표준의 잠재력을 포함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증진하는 데 있어 국제표준의 역할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표준의 개발 및 채택과 연관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관심 분야의 표준,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협업 이니셔티브 탐색, 우수 관행 공유, 정보 교환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2.17조 관세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기술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이 되는 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이 조의 영향과 어떠한 개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조를 검토한다.

제12.18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⁹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가. 이 조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 모든 차이점이나 분쟁은 제18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디지털무역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디지털제품이 “동종의 디지털제품”인 범위에서, 그 디지털제품은 이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소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된다.

- 나. 한쪽 당사국이 이 조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는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제기된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2.19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 있는 컴퓨터 설비를 사용할 것 또는 그 영역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20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는 대중 시장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으로 한정되며, 중요한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 가. 소스코드의 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상업적으로 협상된 계약에 포함하거나 이행하는 것, 또는
 - 나. 당사국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정을 요구하는 것
4.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¹⁰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2.21조

물류

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¹⁰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영업 비밀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다.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 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제12.22조

협력

1. 양 당사국 각자의 경제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관련된 법, 규정 및 그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나. 개인 데이터 보호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라.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마.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식재산 우려사항

바.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사. 디지털 정부

아. 신생 기술

자. 디지털 신원

차. 사이버보안, 그리고

카. 그 밖의 양 당사국 간의 상호 관심 분야

제12.23조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또는 운영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한다.

나. 이 장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감독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는

가. 양 당사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보다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교환, 경험 및 우수 관행 공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활동의 중복을 회피할 필요를 고려하여, 이 장의 업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소위원회와 작업할 수 있다.
 - 다.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반 또는 보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의 활동 및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4.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5. 제3항에 따른 디지털 무역 소위원회의 모든 활동, 또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협력 또는 협업 활동에의 당사국의 참여는 그 당사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건으로 한다.

제12.24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하고 통보한다.